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타 보 고 서

의 안 번호 539

2015년 6월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6월 1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15년 6월 23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학진 물순환기획관)

가. 제안이유

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오수,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수도 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중수도 설치·운영 의무 대상 규정, 권장 대상의 시설규모 변경 및 대 상을 확대 함(안 제6조제1항, 제2항)
-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수 권장사용 대상을 규정함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○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('13.9, 환경부승인)에 따른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빗물, 하수처리수 등에 대한 중수도 설치·관리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[표 1] 물 재이용 시설의 정의 및 사용용도

구분	정의 및 법적근거	사용용도
빗물이용 시설	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 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시설을 말한다. (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)	생활용수, 공업용수, 농업용수, 조 경용수,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도로 이용할수 있으나,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 수목, 텃밭 등 조경용수, 청소용수,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 하고 있음
중수도	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 (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)	되고 있으며, 사용용도는 대부분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며, 도로, 건
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	"하.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"이란 하수 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 시설, 공급관로를 말한다. (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)	(연구)용, 업무용, 상업용 시설의 화장실 용수, 조경용수,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, 일부 도로물청소용으

■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

- 1)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관련(안 제3조)
 - 안 제3조제2항은 현행 '종말처리시설'이란 용어를 「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하고 있는 '폐수종말처리시설' 이란 용어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, 조례와 관련법 간의 용어 불 일치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임.
 - 다음으로, 안 제3조제3항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될 대 상 중 '그 밖에 필요한 사항'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9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.

이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'영') 제3조제1항1)의 제1호부터 제8호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같은 항 제9호의 조례위임 규정에 대해 현행 조례 제9호가 또다시시장이 판단하도록 재차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.

영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와 별개로 조례로 추가 규정하

¹⁾ 영 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(이하 "물 재이용 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^{1.} 관할 지역 내 물 수급(需給) 현황 및 물 이용 전망

^{2.} 물 재이용시설 설치·운영 현황

^{3.}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

^{4.}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

^{5.}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

^{6.}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^{7.}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

^{8.}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

^{9.}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

여 관리계획 수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없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제9호를 삭제하는 것은 무방하다 사료됨.

- 2) 중수도 설치·운영 의무대상 신설 관련(안 제6조제1항)
 - 안 제6조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) 제9조(중수도의 설치·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 항제7호²⁾의 조례위임 규정에 따라 중수도 설치·운영에 대한 의 무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는 한편, 현행 권장대상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려는 것임.

[표 2] 안 제6조 개정골자

중수도 설치·운영	현 행	개 정 안
의무대상	- 조례 별도규정 없음 (법 제9조 적용)	(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례 확대신설) - 법 제9조제2항의 시행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지방공기업)가 시행하는 연면적 6만㎡이상인 모화 및 집회시설, 도매시장, 의료시설, 교육원, 연구소, 도서관 등
권장대상	- 연면적 8,000㎡ 이상 인 공공건물 - 물 사용량 400㎡/일 이상인 공동주택	(일반용 중수도 용량 150㎡/일 이상 기준 적용) - 연면적 30,000㎡이상인 숙박시설 - 연면적 50,000㎡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위락시설, 물류터미널, 방송국, 전신전화국 등

²⁾ 영 제11조(중수도의 설치 대상·관리)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"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

^{1. 「}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
^{2. 「}물류정책 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

^{3. 「}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

^{4. 「}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
^{5. 「}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

^{6. 「}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

^{7.}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

- 현행 조례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(이하 '공공기관')가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8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(증·개·재축 포함, 이하 같음)하는 경우와, 1일 물 사용량이 400㎡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·운영을 단순히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, 의무대상에 대해서는 법 제9조(중수도 설치·관리)의법정 의무대상 외에 별도 규정은 없음.
- 이에 본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의 '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로 정하는 시설물</u>' 규정에 의거, 법 제9조제2항의 공공기관이 연면적 연면적 60,000㎡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해 안 제6조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로 추가([표 2] 참조)하려는 것으로,
- 서울시 공공시설물 중 [표 3]을 중수도 설치 법정 의무대상에 추가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, 따라서 조례 시행 이후에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.
- 3) 중수도 설치·관리 권장대상의 현실화 관련(안 제6조제2항)
 - 현행 조례 제6조는 공공기관이 연면적 8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(증축·개축·재축 포함)하는 경우와 1일 물사용량 400㎡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시장이 중수도 설치·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³)하고 있으나,

- 서울시의 '2013년 물 재이용 관리계획'에서 일반용 중수도를 기준으로 할 때 경제성을 갖는 중수도 합리적 규모가 1일 150㎡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결론⁴)에 도달하였고,
-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일 물 사용량이 1,500㎡(10% 재이용 기준)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숙박시설의 경우 30,000㎡ 이상, 업무시설의 경우 50,000㎡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.
- 현실성이 결여된 현행 제6조를 폐지하는 대신에 「건축법 시행 링」 별표1이 정하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 경제성 있는 연면적 이 상의 경우만 권장대상으로 정하는 안 제6조제2항을 새로이 신설 ([표 2] 참조)하려는 것으로, 그동안 현행 중수도 설치 권장규 정이 경제성 문제에 부딪쳐 실효적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개편이라 여겨짐.
- 4)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 관련(안 제7조의2)
 - 안 제7조의2는 법 제10조제1항5)에 근거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지역(제12조) 내에서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자(공공기관)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건

³⁾ 근거자료: 서울연구원(2009), '물재생 및 관리산업의 활성화 방안연구'

⁴⁾ 숙박시설 : 30,000m²(연면적)×0.05(사용수량)=1,500m²(10% 재이용)→ 용량 150m² 업무시설 : 50.000m²(연면적)×0.03(사용수량)=1.500m²(10% 재이용)→ 용량 150m²

⁵⁾ 제10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、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) ① 「하수도법」 제18조에 따른 공 공하수도관리청(이하 "공공하수도관리청"이라 한다)은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(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수 있다.

축 연면적 5,000㎡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, 시장으로 하여금 인·허가 등 협의 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권장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.

- 서울시는 현재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(2만톤 /일)을 설치하고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재처리수 공급관로(연장길이 32km)를 부설하여 산업용, 업무용, 상업용 시설에 화장실용수. 조경용수, 청소용수 등으로 2016.7월부터 공급 예정에 있는데.
- 그동안 재처리수 사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 요처 확보 및 사용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, 본 조 신설을 통해 사용자 편익이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하수처 리수 재처리수 이용을 촉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
[표 3]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사업 개요

위 치	강서구 마곡동 일원(서남물재생센터 및 마곡도시개발구역)
사업규모	- 재처리시설 : 2만톤/일(1단계 : 3천톤/일, 2단계 : 15천톤/일, 3단계 : 20천톤/일) - 재처리수 공급관로 : 연장길이 32km(D80~D600mm)
사업기간	2009.12 ~ 2016.06
총사업비	227억원

5) 기타 개정사항

○ 기타 개정사항은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- 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"을 "시행령 및 시행규칙"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종말처리시설"을 "페수종말처리시설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대해"를 "대해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제21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(증축、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)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、운영하여야 한다.
 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 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
 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

-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, 같은 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바목에 따른 도서관
-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、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、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.
- 1.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
- 2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- 3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
- 4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
- 5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
- 6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
- 7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- 8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
- 9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
- 10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

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 (변경)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)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, 건축 인가 \ 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.

- 1.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
- 2.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축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첨부"를 "붙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서울시"를 "서울특별시"로 한다.

제14조제3호 중 "파손개소를"을 "파손을"로 한다.

제16조 단서 중 "대행 업자"를 "대행자"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수선"을 "수리"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자"를 "공사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"로 한다.

제19조제4항 중 "따라"를 "따른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"손괴"를 각각 "파손"으로, "손괴예방"을 "파손예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"상당"을 "상응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도로경비"를 "도로결빙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수선과"를 "수리와"로, "손괴"를 "파손"으로, "호의"를 "호를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손괴"를 "파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3호 본문 중 "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」"를 "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장수조례」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」"를 "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」"를 "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」"를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"수도공사"는 "급수공사"로 "수도시설"은 "재처리시설"로 본다.

제21조제1항 중 "대하여"를 "대해서"로 한다.

제25조제3항제3호 중 "야기할"을 "일으킬"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구경별기본요금"을 "구경별 기본요금"으로, "절사한다"를 "버림한다"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요금은"을 "요금은 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경우"를 "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"사용공차"를 "사용오차"로, "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"을 "해당 월의 급수량을 바로 고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의"로, "추징"을 "추가징수"로 한다.

제30조제2항 단서 중 "납기를"을 "납부기한을"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전자고지(이메일) 및 휴대폰"을 "전자고지(전자 우편) 및 휴대전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그 달분"을 "해당 월의"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전단 중 "요금을 납부 기한"을 "요금 납부기한"으로, "연체금은"을 "연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"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 본문 중 "기한 내에"를 "기한까지"로 한다.

제35조 단서 중 "대하여"를 "대해서"로 한다.

제37조의 제목 "(하、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)"를 "(하、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、누수 등 신고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손괴자"를 "파손자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개시하거나"를 "시작하거나"로 한다.

제38조의 제목 "(하、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)"을 "(하、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망실하였"을 "잃어버렸"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에 대하여"를 "자에게"로 한다.

제40조제1항 본문 중 "추징"을 "추가징수"로 한다.

제43조제2항 중 "물 재이용시설"을 "시장은 물 재이용시설"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3호 중 "시행규칙"을 "법 시행규칙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6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행한다.

신、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	제1조(목적)
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	
여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	
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<u>시행</u>	<u>시행령 및 시</u>
<u>령, 같은 법 시행규칙</u> 에서 위임	<u>행규칙</u>
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	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	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
립 등) ① (생 략)	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	②
할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	
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	
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	
고, 「수도법」 제4조에 따른	
수도정비기본계획, 「하수도	
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	
기본계획 및 「수질 및 수생태	
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49조	
에 따른 <u>종말처리시설</u> 기본계획	페수종말처리시설
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	
③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	③
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	
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 〈삭 제〉 하여 필요한 사항

④ (생 략)

제4조(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 제4조(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 의 、 자문) 물 재이용 정책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심의 자 문에 따른다. 〈개정 2014.1. 9 >

1. ~ 5. (생 략)

제6조(중수도의 설치、관리) ① 제6조(중수도의 설치、관리)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「건축법」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8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(증축 \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와 1 일 물 사용량이 400세제곱미 터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 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、운영 을 권장할 수 있다.

(4) (현행과 같음)

의 자문) ---------대해 「서울특별 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제21조에 따른 ----_____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시장은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 이라 한다)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<u>신축(증축、</u>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)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 \ 운영하여 야 한다.
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 설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

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

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 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 (변경)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
-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,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 관
-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· 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 · 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.
- 1.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15에 따른 숙 박시설
- 2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
 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
 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
 화 및 집회시설
- 3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 매시설
- 4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 수시설
- 5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

- 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 링」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 료시설
- 6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
- 7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- 8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
- 9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
- 10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 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 행령」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
- ③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(변경)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〈신 설〉

③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

제8조(하、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) ①「하수도법」제 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외에 하、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~ 8. (생략)
- ②、③ (생략)
- ④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하、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

<u>(4)</u> (연행 제3앙과 같음)
제7조의2(하수처리수 재처리수
공급에 따른 재이용) 시장은 각
종 개발사업, 건축 인가ㆍ허가
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
당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처리
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.
1.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
자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
2.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
아니하는 자가 건축 연면적 5
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
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
제8조(하、폐수처리수 재이용사
업의 인가) ①
붙인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4

인가하는 경우에는 <u>국토해양부</u> <u>장관</u>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⑤ (생 략)

제12조(급수구역) ① 제7조제1 항에 따른 시장의 하、폐수처리 수 재처리수의 공급지역은 <u>서울</u> <u>시</u>의 관할구역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- 제14조(급수설비 공사)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수선공사: 급수설비의 부분 적인 <u>파손개소를</u> 수리하여 원 형을 복구하는 공사

4. (생략)

- 제16조(공사의 시행)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 다. 다만,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 는 급수공사 <u>대행 업자</u>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.
- 제17조(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 ① 공사비용은 당해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

<u> 부장관</u>
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급수구역) ①
서울
<u> 특별시</u>
 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급수설비 공사)
1.、2. (현행과 같음)
3
O. 파손을
<u> </u>
4. (현행과 같음)
4. (원왕과 실금) 제16조(공사의 시행)
세10조(중사의 시행)
2.2.
<u>대행자</u>
제17조(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
비 관리) ① <u>해당</u>
<u>수리</u>

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 한 개조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.

- ②、③ (생 략)
- 제18조(공사비의 산출) ① (생략)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 하여야 한다.
 - 1. 2. (생략)
 - ③ (생략)
- 제19조(공사비의 납부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제3항에 <u>따라</u> 정산환불금은 재처리수 사용자의 미납된 요금 및 다음 달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.
- 제20조(원인자부담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급수시설을 <u>손괴</u>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급수공사와 급수시설의 유지나<u>손괴예방</u>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공사비의 산출) ① (현행
과 같음)
(2)
ਹ ਮੈ
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사용
<u> </u>
1. ` 2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공사비의 납부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④ <u>따른</u>
· 제20조(원인자부담금) ①
세20조(현단자구급급) ①
,
1. (현행과 같음)
2 <u>파손</u>
<u> 파손예방</u>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급수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 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 리수의 요금에 <u>상당</u>하는 금액
- 4. 도로복구비와 <u>도로경비</u> 방 지비용
- 5. 6. (생략)
-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<u>손괴</u> 예방을 위한 시설의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1. 급수시설의 <u>손괴</u> 등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리수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
- 2. (생략)
-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도로복구비는 <u>「서울특별시</u> <u>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</u> <u>레」</u>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

② (현행과 같음)③
1. · 2. (현행과 같음) 3
<u>상응</u> 4 <u>도로결빙</u>
 5. ` 6. (현행과 같음) ④
<u>수리와</u> <u>파손</u>
<u> </u>
1 <u>파손</u>
2. (현행과 같음) ⑤
1. ` 2. (현행과 같음) 3 <u>「서울특</u>
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,

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재처리수 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업체와 계약한 도로 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 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4. (생략)

5.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, 직원경비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」에 따른 여비로 한다.

6. (생략)

⑥ 기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, 징수방법, 이의신청은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에 따른다. 이는 재처리수의 급수시설은 상수도시설기준에 의해 설치하여 수도 급수시설과 동일하기 때문이다("급수공사=수도공사, 재처리시설=수도시설"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)

제21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 저

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

(1)

· 4. (현행과 같음)
5
J.
<u>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</u>
례
6. (현행과 같음)
⑥ 그 밖에
우 "수도공사"는 "급수공사"로
"수도시설"은 "재처리시설"로
<u>본다.</u>
ll 121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

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.

- ② (생략)
- 제25조(급수 중지와 폐전) ①、
 - ② (생략)
 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재처리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. · 5. (생략)
- 제26조(요금의 징수) ① (생략)
 -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,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절사한다.
- 제27조(하、폐수처리수 재처리 수의 요금 산정) ① 하、폐수처 리수 재처리수의 <u>요금은</u> 시행규 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 는 수준에서 결정하되, 사용량

	대해서
	② (현행과 같음)
제	25조(급수 중지와 폐전) ①、
	② (현행과 같음)
	(3)
	1.、2. (현행과 같음)
	3
	일으킬
	4. · 5. (현행과 같음)
제	26조(요금의 징수) ① (현행과
,	같음)
	(2)
	구경별 기본요금
	버림한다.
[[ح	<u>리됩한다</u> . 27조(하、페수처리수 재처리
^]	
	수의 요금 산정) ①
	<u>요금은</u>
	<u>법</u>

- 에 따라 산정한다. ② 이용확대 등 필요한 <u>경우</u> 시
- ② 이용확대 등 필요만 <u>경구</u> 시 장이 따로 요금을 산정할 수 있 다.
- 제29조(계량기의 시험) ① (생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사용공차</u>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,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.
- 제30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 (생략)
 - ② 요금은 격월고지,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급수의 중지, 급수설비의 폐지 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<u>납기를</u> 정하여 징수할수 있다.
- 제31조(납부고지)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, 재처리수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(이메일)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.
 - ② 전월분 미납액은 <u>그 달분</u> 고

과 같음) ②	
	② <u>경우에</u>
제29조(계량기의 시험) ① (현행과 같음) ②	<u>는</u>
과 같음) ②	··
②	제29조(계량기의 시험) ① (현행
사용오차	과 같음)
	②
급수량을 바로 고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의 	<u>사용오차</u>
이미 조정한 해당 월의 	해당 월의
추가정수 제30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	급수량을 바로 고치고 그 결과
제30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	이미 조정한 해당 월의
행과 같음) ②	<u>추가징수</u>
행과 같음) ②	
②	제30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 (현
	행과 같음)
	②
전자고지(전자 우편) 및 휴대전화	<u>납부기한을</u>
전자고지(전자 우편) 및 휴대전화	··
<u>및 휴대전화</u>	제31조(납부고지) ①
<u>및 휴대전화</u>	
<u>및 휴대전화</u>	
	전자고지(전자 우편)
 ② 해당 월의	및 휴대전화
	② 해당 월의

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3조(체납관리) ① 하 차 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연체금을 부담해야하며, 연체금은 다음번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수 있다.연체금 = 미납요금×(3/100)×(체납일수/월력일수)

- ② (생략)
-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<u>기한 내</u> 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 다. 다만,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 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5조(소멸시효) 요금(연체금 포함)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 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. 다만,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<u>대하여</u>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

제33조(체납관리) ①
<u>요금 납부기한</u>
연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
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기한까</u>
<u> </u>
제35조(소멸시효)
<u>대해서</u> -

- 제37조(하、폐수처리수 재처리 수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) ① 하、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 용자, <u>손괴자</u>, 원인자 등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 간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급수설비의 사용을 <u>개시하</u>
 <u>거나</u> 중지하고자 할 때
 - 2. ~ 5. (생략)
 - ②、③ (생 략)
- 제38조(하、폐수처리수 재처리 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 에 대한 책임) ① 하、폐수처리 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<u>망실하였</u>을 때에 는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부담 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. 다 만,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 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 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(생 략)
- 제39조(정수처분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에 대하여</u> 급수를 정지(이하 "정수처분"이라 한다)할 수있다.

제	37조(하、페수처리수 재처리
:	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、
	누수 등 신고) ①
	파손자
	<u> </u>
•	
	1 <u>시</u>
	작하거나
	2. ~ 5. (현행과 같음)
	②、③ (현행과 같음)
	38조(하ᆞ폐수처리수 재처리
	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잃어버
	<u>림 등에 대한 책임)</u> ①
	<u>잃어버렸</u>
	· ② (심세기 기 O)
	② (현행과 같음)
제	39조(정수처분) ①
	<u>자에게</u>

1. ~ 8. (현행과 같음) 1. ~ 8. (생 략) ②、③ (생략) ②、③ (현행과 같음) 제40조(과태료) ① 시장은 사기 제40조(과태료) ① ------등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 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1의 기 ----- 추가징수-----준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 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. (2)、(3) (생 략) ②、③ (현행과 같음) 제43조(연구 ' 개발 촉진 등) ① 제43조(연구 ' 개발 촉진 등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----②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 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 할 수 있다. 제45조(재정지원 비용의 반환) 제45조(재정지원 비용의 반환) ① 시장은 제44조에 의해 설치 비를 지원받은 자가 「서울특별 시 보조금 관리조례」 제21조 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도록 명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1. `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시행규칙 -----

3.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빗

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·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 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- 4. (생략)
- ② (생 략)

-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